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은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최근 동물복지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되고 있으나 대부분 반려동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금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고,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9조 제2호에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